

조문 별 개정 이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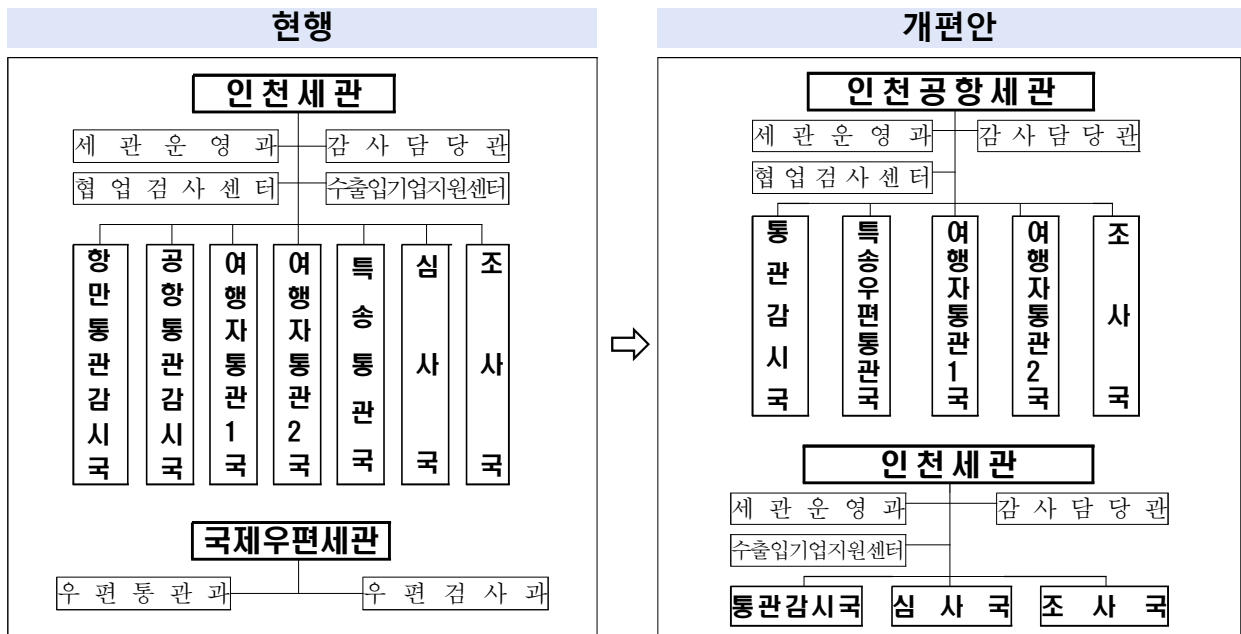
- 인천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개편(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의2, 제25조, 별표1, 별표8, 별표8의2, 별표10)

가. 개정 이유

- 마약 국내반입 원천차단 및 수출입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공항과 항만의 특화된 관세행정 지원 및 전자상거래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

나. 개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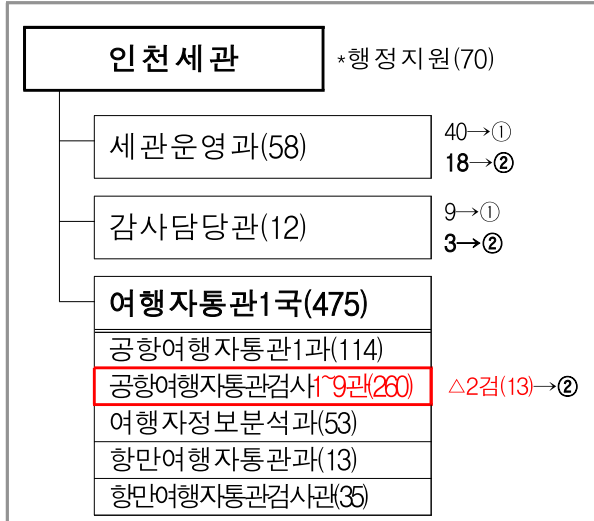
- 인천세관 개편(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폐지
 -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 공항과 항만의 이질적 업무특성*, 업무량·시설 증대**를 고려하여 現 세관을 분리
 - * (인천공항) 마약수사·항공물류·전자상거래, (인천항) 對중국·해상물류·혁신산업 지원
 - ** 수입건수 약 3.3배 증가(23백만건^{'15년}→76백만건^{'22년}), 업무시설 확대(5개→9개→12개)
 - 위해물품 반입 차단 강화 및 효율적인 전자상거래 통관을 위해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에 통합하여 '특송우편통관국'으로 확대·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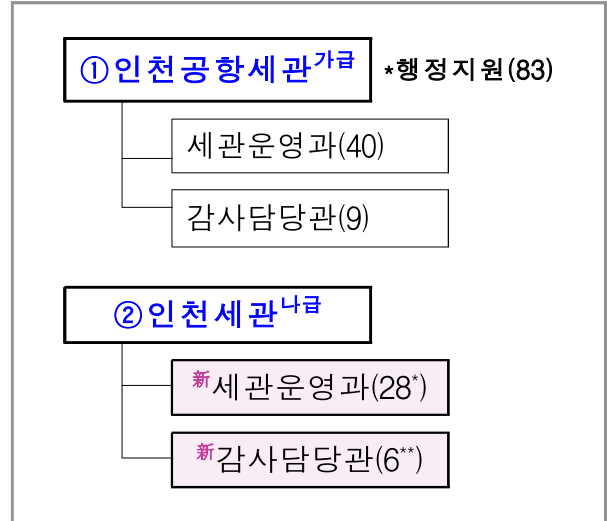
- 인천세관 행정지원 부서(세관운영과, 감사담당관) 신설
 - 여행자통관검사관 2개 감축 → 세관운영과, 감사담당관 신설

< 행정지원부서 신설 전후 조직도 >

< 현 행 >



< 개 편 > (순증 無)



- 인천세관 개편(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폐지에 따른 부서 사무분장 조정

사무분장	현행	조정	
	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협업검사	협업검사센터	협업검사센터	수출입물류과
기업지원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수출입물류과 (기업지원, 인증수출자) 통관검사과 (원산지증명서발급)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조사정보	조사정보과	조사총괄과	조사정보과
기업심사·쟁송	심사총괄과	심사정보과	심사총괄과
원산지검증	FTA검증과	심사정보과	FTA검증과

○ 인천세관 개편에 따라 세관 국장별 보임가능 계급(3·4급 또는 4급) 조정

-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고위) 삭제, 4급 보임가능 직위 추가(+2개)
- *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고위→3·4급) 직급하향, 부산세관 감시국장(3·4급→4급) 직급하향, 인천세관 조사국장(4급) 신설

현행	구분	직위수	고위	3·4급	4급
	계	17	1		15
인천세관	인천세관	7	항만통관 감시국장	공항통관감시국장, 여행자통관1국장, 여행자 통관2국장, 특송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서울세관	5		심사1국장, 심사2국장, 조사1국장, 조사2국장	통관 국장
	부산세관	5		통관국장, 감시국장, 신항통관국장, 심사 국장, 조사국장	

조정	세관	직위수	3·4급	4급
	계	18		15
인천 공항	인천 공항	5	통관감시국장, 여행자통관1국장, 여행자통관2국장, 특송우편통관국장, 조사국장	
	서울	5	심사1국장, 심사2국장, 조사1국장, 조사2국장	통관국장
	부산	5	통관국장, 신항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감시국장
	인천	3	통관감시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 조문별 개정 내용 >

구분	해당조문(별표)	개정내용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세관 개편)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세관장 → 인천공항세관장, 인천세관장 ▪ (국장 보임가능 직급 변경)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고위) 삭제 - 4급 보임가능 직위 추가(+2개) * 서울세관 통관국장→서울세관 통관국장, 부산세관 감시국장, 인천세관 조사국장 ▪ (하부조직 조정) 제3항, 제6항, 제1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세관에 5국43과 재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감시국에 심사기능(심사정보과, 분석실) 부여 - 인천세관에 3국28과 재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감시국에 여행자통관기능(여행자통관과·검사관) 부여

구분	해당조문(별표)	개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폐지 * 우편통관·우편검사과는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으로 이관 ▪ (부서장 보임가능 직급 변경) 제12항 - 수출입물류과장, 통관정보과장 : 4급→4.5급 - ‘심사관’ 삭제
	<p style="text-align: center;">제14조^{신설} (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세관 부서기능 신설) 제1항~제21항 - 43개 부서 기능 신설 - 기업지원·인증수출자 기능을 수출입물류과에 부여(제4항),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능을 통관검사과에 부여(제7항) - 기업심사·쟁송·FIA검증 기능은 심사정보과(제10항)에 부여 - 특송물품, 우편물 통관 사무분장(제15~17항) * 특송통관1과→특송우편총괄과(특송 및 우편물 총괄), 특송통관2~4과→특송통관1~3과(부서명칭 변경), 우편통관과, 우편검사과(특송우편통관국으로 이관) - 조사정보 기능을 조사총괄과에 부여(제18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15조 (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세관 부서 수 및 명칭 변경) 제1항~제17항 - 부서 수(69→27개), 명칭 변경 - 협업검사 기능을 수출입물류과에 부여(제4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17조의2 (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 조항 변경) 제2항 - 특송통관과 사무분장 인용조문 변경 : 제15조제19항 → 제14조제15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25조^{폐지} (인천공항국제우 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항 삭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폐지
	<p style="text-align: center;">별표1 (세관관서의 관할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인천공항세관 ▪ (삭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 (관할구역 변경)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p style="text-align: center;">별표8,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기관 △1 ▪ 관세서기보 △1

구분	해당조문(별표)	개정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별표10</p> <p>(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조직 명칭 변경) - 2) 인천세관 → 2) 인천공항세관 - 4) 인천세관 → 4) 인천공항세관

참고

수시직제 개정 조직도 전·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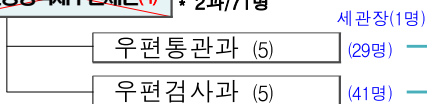
현행(7국71과/1,926) '23.1.31기준

개편(8국71과/1,924) ±1세관, +1국, △2명 4급1, 9급1

~~인천세관~~
(고위 가) * 7국69과/1,85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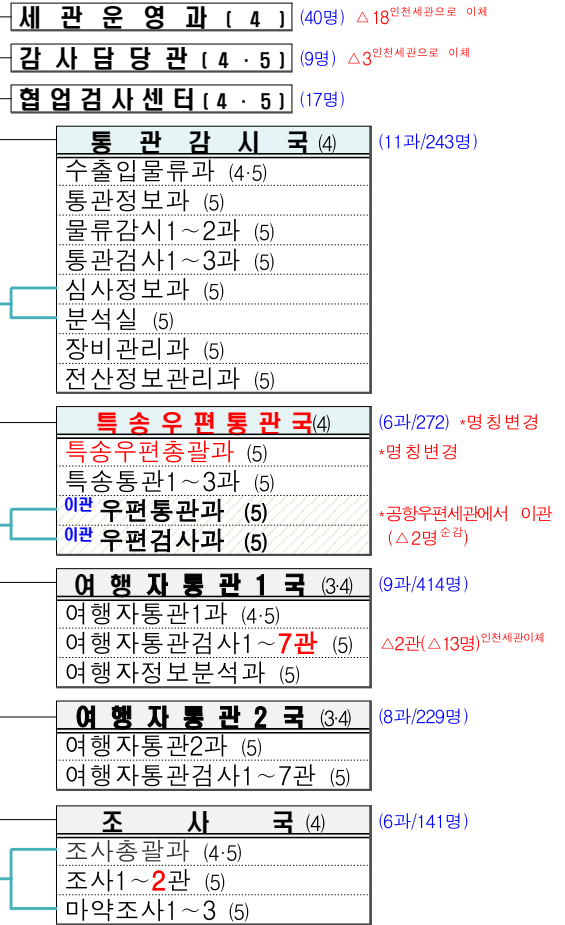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4) * 2과/71명



*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으로 이관

인천공항세관
(고위 가) *5국43과(△2과여행자통관), ±2과우편세관에서 이관
*1,366명(△558명 인천항 이체, △2명 순라)



인천세관
(고위 나) *3국28과(+1국, +2과윤영,라사)
*558명

